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3.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3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3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가. 제안이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위탁기준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립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정비(안 제3조 관련 별표 1)
 -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등을 신설
 -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
- 2)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2 ~ 별표 4)
 -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 3) 상위 법령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정비(안 제1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립체육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비
- 4)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16조 및 제21조)
 -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함
 - 규칙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5)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들의 제척·회피·기피를 규정하여 위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안 제17조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새로 건립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준공이후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관련 조례,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 체육종목 및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징수기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탁 취소 사유와 시설 이용자의 감면대상과 비율 그리고 위탁 및 (재)계약 시 이해관계인의 해당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등 향후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는 구립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관련 별표 2 ~ 별표 4 에서는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규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되,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2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선정심사 시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선정심사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 동(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됨이 없고, 2015.2.12.~ 3.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망원동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신설 체육 종목인 헬스, 볼링장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서, 그 동안 적용해 왔던 영리생활체육관, 와우산 배드민턴장 등 우리 구 구립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타자치구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용료 책정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사용료 책정으로 많은 구민들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경우 2015년 6월말 준공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기간과 선정 후 수탁자가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준공 기간 내 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되어 수탁자가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관련부서와 확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구민들이 마포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5. 3. 27.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수탁기관 선정 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구성원 자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라고 함(안 제17조제1항)
- 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함.(안 제17조제2항)
- 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으로 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2명” 으로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으로 함
(안 제17조제2항제3호)

바.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으로 함
(안 제17조제2항제4호)